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2021. 9. 1.

1 안전보건 교육 관련 조치사항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21.6.10.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이후인 경우 법정이수기
간 만료일을 따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사업주 및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각사업장의 업
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
장교육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기타사항

- (기본인력강의 점검 유예)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
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 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 · 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분기별 6시간 ▶ (사무직)분기별 3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 · 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 (일반) 1시간 ▶ (건설업) 4시간	-	▶ 1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년 주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2년 주기)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 (2년 주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16시간
	단기 · 간헐	▶ 1시간	-	▶ 2시간

2 안전보건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출처: '21.7.19. 「코로나19 (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

공통사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조치사항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산업보건협회(kiha21.or.kr) 정보마당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